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89호 2021. 3. 16.(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20호)
-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21호)
-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22호)
- 예천군 군세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23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42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신청 :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수에게 신청

- 통지 :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 선정 후
신청 결과 통지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의무 :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 지속,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정보 보호
- 우대 :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2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cutycjk@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u><신 설></u>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

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신 설>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
청구인 · 대리인 지정일자 · 결
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
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
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
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
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
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
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u>제7조</u> (생략)	<u>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그 밖에 <u>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u>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10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천군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통지 및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서류 규정 (안 제14조 ~ 제16조)

3. 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2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cutycjk@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예천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 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예 천 군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용

○ 신청인 : ○○○ 귀하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4-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용

○ 예천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예천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4-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관인생략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u> <u>제8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선</u> <u>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u> <u>제10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5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u> <u>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천군</u> <u>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u> <u>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u> <u>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예</u> <u>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u> <u>건의 기록 · 관리는 별지 제12호</u> <u>서식에 따른다.</u>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조례를 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관련 조문 변경 (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함.

○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종업원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 (안 제9조)

다.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고관련 적용조문 변경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2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cutycjk@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제3장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제7조 및 제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를 “영 제85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사실 발생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 ---제2조-----.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th style="width: 50%;">세액</th></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000원</td></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td><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50,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5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
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의 소유자는 예천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
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
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
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
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
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u>때</u> 5. <u>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u>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u>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u>종업원수, 급여총 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u>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 터 30일 이내에</u>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9조(세율) ----- ----- <u>같은 조</u> <u>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u> <u>한다.</u> 제10조(신고의무) ① ----- ----- <u>영 제85조의4에</u> <u>따라</u> ----- ----- --. ② <u>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u> <u>다음 각 호---</u> <u>그 사유가 발생</u> <u>된 날</u>----- -----. 1. ~ 4. (현행과 같음)
--	--

【지방세법】**제7장 주민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절 개인분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
-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5조)
 -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통합(안 제6조 및 제7조)
- 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별지 서식 제목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3. 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2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cutycjk@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2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예천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예천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지방세법】**제7장 주민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절 개인분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 확대 (안 제2조)

- 현행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개정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

나. 상위법 경감률 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3조 삭제)

-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감률 적용

다. 문화재,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 현행 : 2020년 12월 31일
- 개정 : 2022년 12월 31일

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안 제6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문 변경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안 제9조)

- 현행 : 2021년 12월 31일
- 개정 : 2022년 12월 31일

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안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
장, 고급선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2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cutycjk@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 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을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로 하며, 같은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8조 중 “감면율”을 “경감률”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신 설>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
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② 장애인 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
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영 제8조제6항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2022년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
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
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
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
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려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 법 제78조
의3제12항-----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

----- 2022년 -----

_____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
면) -----
----- 경감률-----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 -----

2022

년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 ⑧ (생략)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

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 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생략)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 ⑪ (생략)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임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

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생 략)

⑤ ~ ⑪ (생 략)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 (생 략)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생략)

⑬ ~ ⑮ (생략)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 ⑥ (생략)